

# 이사회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)

- (1)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(2)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 5 조 (의장)

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는 결의로 선임한다. 다만 이사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대표이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의에 의한 임시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5 조의 2 (사외이사의 임기)

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.

### 제 3 장 회 의

#### 제 6 조 (종류)

- (1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(2)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한다.
- (3)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 7 조 (소집권자)

- (1)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(2)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 8 조 (소집절차)

- (1)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이를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(2)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#### 제 9 조 (결의방법)

- (1)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일정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을 가중할 수 있다.
- (2)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(3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(4)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## 제 10 조 (부의사항)

(1)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
-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
- ③ 재무제표의 승인
- ④ 정관의 변경
- ⑤ 자본의 감소
- ⑥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분할 및 회사의 해산 이후 영업의 계속
- ⑦ 주식의 소각
- ⑧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⑨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⑩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⑪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⑫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⑬ 주식배당 결정
- 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⑮ 이사의 보수
- ⑯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와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와의 거래의 승인
- ⑰ 상법 제 542조의 9에 따른 회사와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
- ⑱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및 보고할 의안

#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①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③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
- ④ 공동대표의 결정

- 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
- ⑦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⑧ 이사회 내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한 결의
- ⑨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⑩ 등기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⑪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
- ⑫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⑬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⑭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% 이상이면서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, 다른 회사와의 중요한 합작 또는 동업계약의 체결
- ⑮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지분을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% 이상을 처분하여 100분의 5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
- ⑯ ESG 계획 및 이행 결과 검토

### 3. 재무에 관한 사항

(이하, 자산·자기자본·자산·매출·부채는 최근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)

- ①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② 결손의 처분
- ③ 사채의 모집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- ④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에 관한 사항
- ⑤ 준비금의 자본전입
- ⑥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의 2.5% 이상의 유무형자산 취득 및 처분
- ⑦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2.5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
- ⑧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차입
- ⑨ 양수 또는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%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- ⑩ 양수 또는 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%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
- ⑪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부채의 10% 이상인 영업의 양수

- ⑫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 보증, 채무인수, 면제
- ⑬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2.5%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(단 종업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의 경우는 제외)
-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하거나, 동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법 제11조의2 및 동시행령 17조의8에서 정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
#### 4. 이사에 관한 사항

- ①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② 타 회사의 임원 겸임

#### 5. 기 타

- 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②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(2)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# 제 11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(1)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(2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.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

- 4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5.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도록 정하는 사항
- (3)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(4)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(5)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제 12 조 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 13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(1)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(2)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 14 조 (의사록)

- (1)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(2) 의사록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(3)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(4)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 제 15 조 (간사)

- (1)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(2)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 칙

- 이 규정은 2004년 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7년 5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8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1년 3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4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5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년 2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0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1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